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16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-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-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(2019.4.23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협의회명 :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
-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(규약 제13·14조)
  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‘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
  -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 ~1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규정하였음.
- 따라서,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